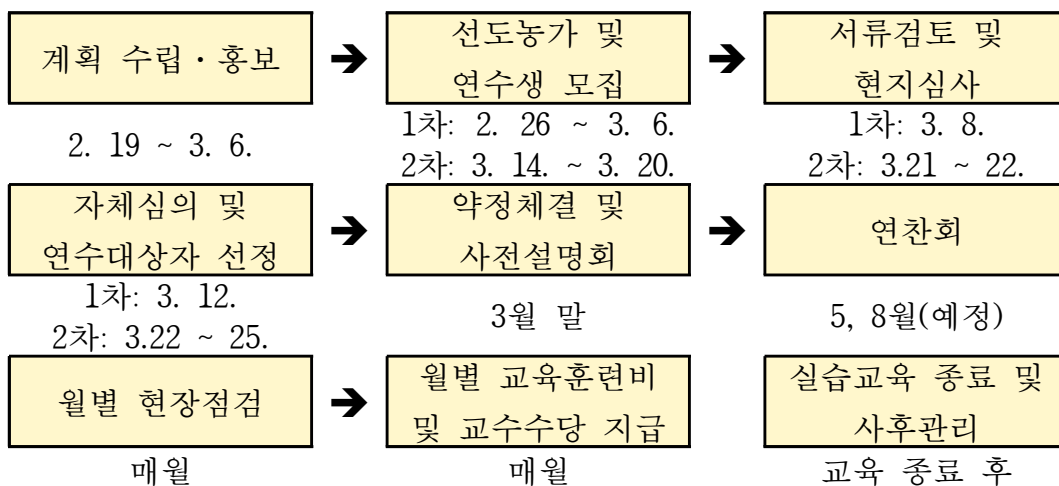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대상자 추가 모집 계획

1.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4. 3월 ~ 11월
- 사업량: 3팀 6명(선도농가 3, 귀농연수생 3) * 연수생만 교육수료처리
→ 현재 선도농가 1명, 연수생 2명 선정
→ **선도농가 1명, 연수생 1명 추가모집**
- 사업비: 18,000천원(국비 50%, 도비 50%)
 - 1,200천원/월(160시간 기준) × 3팀 × 5개월 = 18,000천원
 - 월별 연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금액 별도 산정·지급
 - ※ 전체 기간 및 월별 연수시간은 연수생과 선도농가 간 사전 협의를 통하여 조절
 - ※ 연수생 800천원/월, 선도농가 400천원/월(20일, 160시간 기준)
- 사업내용: 선도농가(멘토)-연수생(멘티) 간 일대일 매칭을 통하여 연수생 수요작목 현장실습

2. 세부일정



* 실습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3. 교육신청

- **신청대상: 선도농가 1명, 연수생 1명**
- **홍보 및 신청기간: 2024. 3. 14.(목) ~ 3. 20.(수)**
- 신청방법: 직접 방문(제주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 ☎문의 760-7721~23)

○ 자격조건 및 제출서류

【연수생】 ※ 5가지 조건 중에 1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대상자

자격 조건	①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 ② 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③ 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④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⑤ 예비귀농인(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제주 관내(애월읍, 조천읍, 제주시 동지역) 거주자이어야 함(40세 미만 청장년 제외) ■ 대상자 여부는 주소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표를 통한 증빙으로 확인함 (예비귀농인은 제외, 별도의 이주계획 증빙 자료로 확인)
제출 서류	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붙임 3 서식) ※ 약정 이후 e-HRD 시스템에 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붙임 4 서식) 입력 ② 보안서약서(붙임 9)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붙임 10 서식)

【선도농가】

자격 조건	① 도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교육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1)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농촌진흥사업 시범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선정시 우대 할 수 있음) 2)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초보단계의 연수인 경우 3년 이상된 정착 귀농인도 가능) ※ 해당 지역에 연수 관심분야의 선도농가가 없거나 연수희망자가 타지역의 맞춤형 연수를 원할 경우, 연수를 받고자 하는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확인)한 선도농가 실습장에서도 연수 가능(제주센터 관리가능 범위 내)
제출 서류	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붙임 5 서식) ②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붙임 6 서식) ※ 운영계획서: 연수시행자의 주작목 및 기술현황, 실습사항,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목표의 기대 효과를 포함하여 작성 ※ 약정 이후 e-HRD 시스템에 선도농가 학습지원계획서(붙임 7) 입력 ③ 보안서약서(붙임 9 서식)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붙임 10 서식)

4. 대상자 선정 및 약정체결

【대상자선정】

- 연수대상자 선정을 위한 후보자 목록을 작성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수대상자 선정 ※ 연수대상자 선정 시 심의회에서 선정
- 농식품부 2024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 정착 지원사업」 신청자를 우대할 수 있음
- 연수대상자 선정은 연수시행자(선도농가)와의 약정체결(붙임 12 서식)을 통해 최종 선정
- 연수생은 안전을 위해 (농업인)안전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 가입비용은 연수생 부담
- 공모를 통해 접수된 선도농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여, 선정기준에 의해 연수시행자를 최종 선정

【약정체결】

- 선정된 선도농가와 연수생간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 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약정 불가
- 약정체결은 3~7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연수생 및 선도농가 동의하에 연수 희망시 사업담당기관은 예산을 고려하여 연장하여 약정 가능
- 연수생과 선도농가는 현장실습교육 동안 각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연수생 또는 선도농가가 불성실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농업기술센터에 연수생 또는 선도농가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음
-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수생과 선도농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등 >

- ★ 중대한 허위사실로 약정 체결 시 약정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금액 전체 회수
- ★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연수생에 대한 약정금액 미지급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변경하고 필요시 추가 약정 체결 추진

- 연수생 및 선도농가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약정이 가능하며, 이 때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연수생과 선도농가 간 다시 약정체결 가능

5. 운영방법

- (필수) 연수생 희망 작목별 선도농가 협력 현장실습
 - * 단순노동(작업)을 지양하고 학습지원, 기술이전, 창업역량 강화에 역점 추진
- (선택) 오리엔테이션, 간담회, 평가회, 자율학습조직, 자가영농실습 등
- 현장실습교육 기간의 탄력적 운영: 3~7개월, 월 160시간 이내
 - 자가영농 실습(일 4시간, 월 80시간 이내): 사업담당 및 선도농가와 협의
 - ※ 자가영농의 경우에도 선도농가 실습을 병행하여야 함
 - (예) 자가영농 오전 4시간, 선도농가 오후 4시간
- 주작목+부작목 연수가능, 선도농가 및 연수생 복수지원 가능
- 잔여 실습기간을 우수 실습농가 및 차순위 실습농가에 배정 가능
- 1명의 선도농가에 최대 2명의 연수생이 현장실습 가능(3명 이상 불가)
- 1명의 연수생이 2명의 선도농가에서 순차적 실습가능(연수기간 중복불가)
- 현장실습보고서(붙임 8)를 월 1회 e-HRD 시스템에 등록

6. 교육생 관리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수생 선정 및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장 지정 완료 후, 약정체결 전 선도농가가 제출한 연수운영계획서, 현장실습교육장 관련 각종 자료 등과 연수생이 제출한 연수신청서를 서로 교환·열람하도록 하여 사전 충분한 판단 기회 제공으로 약정 체결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일시·장소를 정하여 『사전설명회』 개최(필수)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약정기간 중 쌍방의 약정 이행 여부를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추진 상황(결과) 점검 보고서(붙임 13)을 작성하고, 이를 관리·비치하여야 함
- 연수생 및 선도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선도농가·연수생 pool 구축 및 연수생과 선도농가에 대한 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함
- 현장실습교육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모든 연수생에게 스마트기기 (휴대폰)을 활용한 「현장실습교육 출석관리시스템」을 사용하게 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 하여야 함 * <http://hrd.rda.go.kr>
- ※ 모든 연수생은 반드시 『현장실습교육 출석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출결관리를 해야하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수생 선정단계에서 시스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연수생을 선발해야 함
- ※ 단, 시스템 점검, GPS 미작동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해당 일에 한하여 수기 출근부(붙임 15) 인정 가능

- 원칙적으로 「현장실습교육 출석관리시스템」을 통해 출근등록 및 퇴근등록이 모두 확인된 출석일을 연수일로 인정함
- 연수일로 인정된 해당일의 연수시간: 퇴근시간-출근시간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현장실습교육 종료 후 2년간 수료생에 대하여 관리대장(붙임 20)을 작성·비치하고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 ※ 사후관리내용: 귀농 여부, 영농종사 현황 등

7. 교육훈련비 및 교수수당 지급

【연수생】

- (지원금액) 월 80만원 한도(3~7개월간) 지급
- (지원조건) 매월 10일(1일 8시간) 이상 연수한 경우만 지원하며, 이때 지원비는 연수일에 비례하여 지급
 - * 월 10일 미만 연수 시 해당 월 교육지원비는 지급하지 않음
 - * 1일 지급단가(8시간 기준): 4만원(교통비, 식비 등 포함)
- (1일 교육시간 한도) 8시간
- (신청방법) 연수생은 교육훈련 후 매월 단위로 현장실습보고서

(붙임 8)를 시스템에 등록 후, 입금받을 통장사본을 첨부한 교육 지원비 청구서(붙임 14)를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함

* 최초 신청 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연수약정서도 함께 제출

○ (지급시기 및 방법)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월별 현장실습보고서(시스템) 확인 및 제출서류 확인 후 교육지원비를 연수생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함

* 출석 및 연수일 확인은 『현장실습교육 출석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선도농가】

○ (지원금액) 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한도(3~7개월) 지급

* 연수생이 2명일 경우 연수생 각각 계산하여 월 80만원 한도로 지급 가능

○ (지원조건) 지원비는 연수일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이는 연수생에게 현장실습에 필요한 실습포장과 재료 등을 제공하는 조건임

* 단, 실습포장에서 나온 결과물은 선도농가의 소유물로 함

* 1일 지급단가(8시간 기준): 2만원(식비, 실습재료비 등 포함)

○ (신청방법) 선도농가는 교육훈련 후 매월 단위로 현장실습보고서(붙임 8)를 시스템에 등록 후, 입금받을 통장사본을 첨부한 교육지원비 청구서(붙임 17)를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함

* 최초 신청 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연수약정서도 함께 제출

○ (지급시기 및 방법)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월별 현장실습보고서(시스템) 확인 및 제출서류 확인 후 교육지원비를 선도농가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함

* 출석 및 연수일 확인은 『현장실습교육 출석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8. 행정사항

○ e-HRD 시스템 입력

- 교육과정 등록(담당자): 교육 전
- 회원가입(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선정 후 1주 이내
- 사업대상자 매칭(담당자): 연수생·선도농가 약정 후 1주 이내
- 월별보고서 등록(사업대상자): 매월

- 수료생 등록(담당자): 교육 후 2주 이내

○ ASTIS 등록

- 사업계획<양식 1>: 사업대상자 선정 완료 시
- 결과보고<양식 2>: 하반기 11. 29. 까지

9. 기대효과

- 연수 기회 지원으로 영농기술 전파 및 기술센터 또는 전문 농업인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농촌지역 조기적응에 기여

<양식 1>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																		
센터	구 분	성 명	성 별	연 령	주 소	이 메 일	휴 대 폰	연 작 수 목	연 기 (개)	수 간 월	영농현황			선도농가 구분				
											영농중	영농진입준비	추후결정	선도농업인	농업법인	WPL	신지식인	기타
00 센터	선도농가																	
	귀농연수생																	
	선도농가																	
	귀농연수생																	

* 영농현황은 귀농연수생만 작성하며, 해당되는 사항에 ○표

* 선도농가 구분은 선도농가만 작성하며, 해당되는 사항에 ○표

<양식 2>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진실적																			
○ 현장실습교육 대상자 명단																			
센터	구 분	성 명	성 별	연 령	주 소	이 메 일	휴 대 폰	연 작 수 목	연 기 (개)	수 간 월	영농현황			선도농가 구분					예산집행액(천원)
											영농중	영농진입준비	추후결정	선도농업인	농업법인	WPL	신지식인	기타	
00 센터	선도농가																		
	귀농연수생																		
	선도농가																		
	귀농연수생																		

* 영농현황은 귀농연수생만 작성하며, 해당되는 사항에 ○표

* 선도농가 구분은 선도농가만 작성하며, 해당되는 사항에 ○표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센터	문제점	개선방안

○ 우수사례(센터별 1건)

우 수 사 례

○ 2022~2023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수료생 관리대장 *(붙임 20)참조

No	성명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	주소	연작 수목	연수 기간 (개월)	영농현황 (실습종료 시)			영농현황 (실습종료 1년 후)			영농현황 (실습종료 2년 후)		
								영농중	영농진입준비	추후결정	영농중	영농진입준비	추후결정	영농중	영농진입준비	추후결정
1	홍길동	남	2000.1.1.	010-0000-0000	전주시	사과	2021.5.1.~9.30.(5개월)			○		○		○		
2																
3																

* 농업기술센터는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수료 후 2년간 사후관리 실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참고서식】

< 목 차 >

- (붙임 1) 선도농가 선정기준(안)
- (붙임 2) 연수생 선정기준(안)
- (붙임 3)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 (붙임 4) 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시스템 입력)
- (붙임 5)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 (붙임 6)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 (붙임 7) 선도농가 학습지원 계획서(시스템 입력)
- (붙임 8) 현장실습보고서(시스템 입력)
- (붙임 9) 보안서약서
- (붙임 10)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붙임 11)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 현황
- (붙임 12)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연수 (표준)약정서
- (붙임 13)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서
- (붙임 14) 연수생 교육지원비 청구서
- (붙임 15) 연수생 출근부
- (붙임 16) 연수생 현장실습교육 실습일지
- (붙임 17) 선도농가 교육지원비 청구서
- (붙임 18)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연수 추진실적(결과) 보고서
- (붙임 19)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수료 증명서
- (붙임 20)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수료생 관리대장

선도농가 선정기준(안)

평가항목	배 점	평 점	비 고
○ 연수시행 기반 및 수행능력 - 동일 또는 유사사업 수행경험 * 고용부 농산업인턴제, 농식품부 WPL 등 - 농촌진흥사업 시범교육장 및 교육이수실적 - 영농규모 및 관련분야 기술보유 현황 *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시설 등 - 실습포장, 교육장 위치 및 효율성, 교재 등 구비여부	30		
○ 연수계획의 적절성 및 실효성 - 연수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월별 실습내용의 실천 가능성 - 연수 후 사후관리 및 기대효과	40		
○ 기타여건 - 농업기업, 유관기관 등 연수 관련 협력 수준 - 작목반, 타 농가와의 협력 및 참여도 - 관련분야 자격증 보유 여부 - 현장실습 코칭 및 지도계획(시스템 활용 등) - 여성농업인 여부	30		
합 계	100		
종 합 의 견			

연수생 선정기준(안)

구분	평가항목	평가 및 배점기준	점수
계	100점		
신청자 자격 (40점)	○ 신청자 연령(10) ○ 본인 포함 가족 수(10) ○ 귀농 후 농촌거주기간(10) ○ 2024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5) ○ 여성 또는 부부참여(5)	○ 만 30세 이하(10), 31~40세(7), 41~50세 (5), 51~60세(3), 61세 이상(1) ○ 4명 이상(10), 3명(7), 2명(5), 1명(3) ○ 3년이상(10), 1~2년(7), 1년 미만(5) ○ 신청자(5), 미신청자(0) ○ 여성 또는 부부참여(5), 그 외(0) ※ 증빙서류: 주민등록 관련자료(주소이력 포함)	() () () () ()
귀농교육 (15점)	○ 귀농교육 이수시간(15)	○ 100시간 이상(15), 71~99시간(10), 51~70시간(5), 21~50시간(3), 20시간 이하(1) * 사이버교육은 수료시간의 50% 인정 ※ 증빙서류: 교육수료증 등	() ()
사업규모 (10점)	○ 농지보유 및 임차규모(5) ○ 농업시설 및 임차규모(5)	○ 농지 6,000㎡, 대가축 2두 이상(5) 농지 6,000㎡, 대가축 2두 미만(3) ○ 하우스 등 농업시설 1,500㎡ 이상(5) 하우스 등 농업시설 1,500㎡ 미만(3) * 임차농지 및 시설 포함 ※ 증빙서류: 농지원부 등 관련증빙자료	() () () ()
사업계획 (20점)	○ 사업계획 수립(10) ○ 시스템 활용의지 및 사업화 방안(10)	○ 우수(10), 보통(7), 미흡(5) ○ 우수(10), 보통(7), 미흡(5) ※ 증빙서류: 사업계획서(시스템활용계획 등)	() () ()
기타여건 (15점)	○ 신청자 영농 및 사업 의지(10) ○ 마을주민과 화합 및 마을기여도(5)	○ 우수(10), 보통(7), 미흡(5) ○ 우수(5), 보통(3), 미흡(1) ※ 증빙서류: 자율양식	() ()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①연 령(만)		②(이주 전) 거주지	예) 경기 수원
③기 이수 귀농 교육 과정명	예) 농촌진흥청 제대예정군인 귀농교육(' 19)		
현 주소지			
연 락 처		이메일 주 소	
④연수희망작목	(주작목) (부작목)		
⑤연수희망지역	(최우선 지역)	(우선 지역)	(차선 지역)
⑥연수희망기간			
⑦자기소개 및 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유			
⑧만 40세 미만의 경우	농식품부 2024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사실 여부		☐ 신청 ☐ 미신청
⑨기타 특이사항			
⑩추천기관 확인란	(소속)	(직위)	(성명) (인)

본인은 2024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를 받고자 위와 같
이 신청합니다.

신 청 일: 2024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별첨: 작성 시 유의사항(뒷면)

<뒷면>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작성요령

- ① 연 령(만):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기준
 - ② (이주 전) 거주지: 귀농 전에 거주했던 지역을 간략하게 기재
 - ③ 기 이수 귀농교육 과정명: 우선순위 선정 시 활용, 해당 시군은 필요 시 귀농 교육기관에 사실 여부 확인
 - ④ 연수희망작목: 연수를 희망하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 ⑤ 연수희망지역: 연수를 희망하는 지역을 순차적으로 읍·면 단위로 기입
- 희망 선도농가(농업법인)가 있을 시 기재 가능
 - ⑥ 연수희망기간: 연수희망기간을 최소 3개월 이상으로 하여 개월 수로 표기하되,
연수 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3월~12월)
 - ⑦ 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유: 선도농가와 의 약정체결 시 판단 근거로 활용하는
내용이므로 구체적으로 기술(별지 사용 가능)
 - ⑧ 만 40세 미만의 경우: 농식품부 2024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사실 여부에 반드시 체크
 - ⑨ 기타 특이사항: 선도농가에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 ⑩ 추천기관 확인란: 신청지역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귀농 총괄부서에서
연수신청서 사전 확인·보완 후 추천 가능
-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붙임 4]

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시스템입력)

☐ 연수개요

시군명	연수생		선도농가 성명(예상)	현장실습기간 (희망기간)	희망 연수작목
	성명	귀농연월			
		ex)2022. 3		ex)4.1~9.30	

☐ 현장실습교육 동기(목적)

☐ 현장실습교육을 통해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3가지 이상)

【농업기술, 사업화기술, 사업마인드, 관계강화 등】

- ☐
- ☐
- ☐
- ☐

☐ 선도농가에게 바라는 점

[붙임 5] <앞면>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① 신청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사업장 주소					
연 락 처		이메일 주소			
② 연수가능작목	(주작목)		(부작목)		
③ 연수가능지역					
④ 연수가능기간					
⑤ 자기소개	1. 주작목의 영농규모 2. 전체 영농규모 3. 영농경력(년)				
⑥ 현장실습 연수 운영계획 요약					
⑦ 기타 특이사항					
⑧ 추천기관(단체) 확인란	(소속)	(직위)	성명	(인)	적 합 여부

본인은 2024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침에 따라 ‘현장실습 교육장’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 일: 2024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별첨: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뒷면>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작성요령

- ① 신청자: 농업인은 성명과 생년월일, 농업법인은 명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② 연수가능작목: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 기입
 - ③ 연수가능지역: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기입
 - ④ 연수가능기간: 연수가능기간을 최소 3개월 이상으로 하여 개월 수로 표기하되, 연수 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3월~12월)
 - ⑤ 자기소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 근거로 이용되므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영농규모, 영농경력, 매출액 등을 상세히 기재(필요시 별지에 작성 가능)
 - ⑥ 현장실습 연수 운영계획 요약: 현장실습교육의 연수 과정 및 연수 방법 등을 기재하되, 별첨의 운영계획서를 요약하여 기입
 - ⑦ 기타 특이사항 : 연수에 있어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 ⑧ 확인란: 도농업기술원장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수시행자(선도농가) 후보자를 확인 시 후보자의 자질과 소양, 영농기술 수준, 연수 관련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함
-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붙임 6] <앞면>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①신청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②연수가능작목	(주작목)	(부작목)		
③연수가능기간				
④영농규모 및 기술보유 현황				
⑤교육의 주요 내용 및 목표				
⑥월별 실습사항				
⑦실습 기대효과				
⑧추천기관(단체) 확인란	(소속) (인)	(직위)	성명	적 합 여 부

본인은 2024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신 청 일: 2024년 월 일
신 청 인: (인)

<뒷면>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작성요령

- ① 신청자: 농업인은 성명과 생년월일, 농업법인은 법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② 연수가능작목: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 기입
 - ④ 연수가능기간: 연수가능기간을 최소 3개월 이상으로 하여 개월 수로 표기하되, 연수 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3월~12월)
 - ④ 영농규모 및 기술보유 현황: 연수생이 선도농가를 선택하는 판단 자료로 이용되므로 구체적으로 작성
 - ⑤ 교육의 주요 내용 및 목표: 연수생에게 제공하는 연수 내용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 ⑥ 월별 실습사항: 연수가능기간 내에 월별로 진행할 주요 현장실습사항 기재
 - ⑦ 실습 기대효과: 연수가능기간 내에 현장실습 수행 시 기대되는 영농기술 및 경영 능력 향상 등을 기재
 - ⑧ 확인란: 도농업기술원장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하여 선도농가 후보자의 운영계획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 시 선도농가 후보자와 협의·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붙임 7]

선도농가 학습지원 계획서(시스템 입력)

구 분	주 요 내 용							기타 사항
개 요	시군명	선도농가		연수생 성명 (예상)	연수희망기간		연수 지원 작목	
		성명	영농연월		시작일	종료일		
핵심 생산기술								
경영· 유통 및 창업								
농촌적응 노하우								
견학· 지인 소개								
기대효과								

[붙임 8]

현장실습 보고서(시스템입력)

○ 사업개요

구분	이름	작목	계약기간	월 교육일 수	규모(m ³)
연수생					
선도농가					

○ 경영계획, 실천, 점검(To Do List)

* 연수생 작성

번호	경영계획	경영실천(창업접목)
1		
2		
3		
4		
5		

○ 향후 계획 및 시사점

선도농업인	연수생

○ 농업경영 코칭

* 센터 담당자 작성

	담당자 확인 (서명)
2024년 월 일	

보안서약서

본인은 농촌진흥청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현장실습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협약 기간 중은 물론, 협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절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 농촌진흥청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운영지침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담당 공무원의 운영지침 상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 농촌진흥기관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 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현장실습교육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현장실습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성실한 자세로 현장실습교육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자:

(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붙임 10]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상기 본인은 농촌진흥청의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관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성명 (인)

○○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붙임 11]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 현황

(단위 : ha, 마리, 년)

성명	연령 (만)	전화번호	이메일	영농규모 등			
				주작목명	주작목 영농규모	전체 영농규모	영농 경력

< 작성요령 >

- 성명: 농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기재
- 나이: 2024년 1월 1일 기준
- 영농규모: 농지 · 시설하우스 · 축사 등은 평 또는 ha기준, 가축은 두수
- 영농경력: 년 단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연수 (표준)약정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소장을 “갑”이라 하고, 선도농가 ()를 “을”이라 하며, 연수생 ()을 “병”이라 하며, “갑”, “을”, “병”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약정기간: 2024년 월 일부터 2024년 월 일까지(개월)

2. 약정내용

제1조(총칙) “을”은 “병”에 대하여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상의 내용을 성실히 연수 및 교육 등을 제공하며, “병”은 “을”의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연수 및 교육 등을 이수한다.

제2조(약정의 해약) ① “갑”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약정을 해약 또는 무효화할 수 있다.

1. “을” 또는 “병”이 허위 사실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약정을 무효화할 수 있다.
2.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
3.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

② 약정이 무효화 되었을 경우 “갑”은 “을” 또는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기지급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한다.

③ 약정이 해약되었을 경우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갑”은 “을” 또는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연수생과 선도농가) ① “병”은 당초 “을”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내용과 실제 연수 내용 등이 현저히 다를 경우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 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을”은 “병”이 당초 “을”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연수 내용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 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을” 과 “병” 간에 연수 과정 중 발생하는 분쟁 및 이견 등에 대해 “갑” 은 중재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을” 과 “병” 의 민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을” 은 현장실습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고 예방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병” 은 “을” 의 지시에 따라 현장실습교육에 임하여야 한다.
- ⑤ “병” 은 현장실습교육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인)안전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을” 은 “병” 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손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을” 과 “병” 의 민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지침 및 약정의 준수) ① “을” 과 “병” 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보조금 지급 중단, 연수대상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5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이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 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7조(특약)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농촌진흥청의 지침과 본 약정 제1조 내지 제6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갑” , “을” , “병” 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 특약사항 :

위 약정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3부를 작성하고 “갑” , “을” , “병” 이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 “을” , “병” 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월 일

“갑”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인 또는 서명
“을”	선도농가 성명:	인 또는 서명
“병”	연 수 생 성명:	인 또는 서명

<붙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1부.

[붙임 13]

<앞면>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서

①선도농가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②연수생	(성명)	(생년월일)
③연수작목	(주작목)	(부작목)
총 연수기간		
④보고연수기간		
⑤ 교육의 주요 내용		
⑥기타 특이사항		
⑦종합검토의견		

2024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합니다.

2024년 월 일

점검자: 소속 직위 성명 (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뒷면>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서 작성요령

- ① 선도농가: 개인의 경우는 성명과 생년월일, 농업법인은 법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② 연수생: 연수생에 따라 각각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함
 - ③ 연수작목: 연수를 제공하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 ④ 보고연수기간: 추진상황 보고 내용에 해당하는 연수 기간을 기입(결과
보고서에서는 전체 연수기간과 동일)
 - ⑤ 교육의 주요 내용: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한 교육 내용을 기입
 - ⑥ 기타 특이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
- * 추진상황 점검 시 연수생이 없을 경우 부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외출계 등)
- ⑦ 종합검토의견: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한(할) 사항을 기입

[붙임 14]

()월 연수생 교육지원비 청구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은행계좌	계좌번호:(은행)			

교육 훈련 내용	
----------------	--

위와 같이 연수생 현장실습에 따른 교육지원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연수생 (서명 또는 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구비서류】 1. 연수약정서 사본(기 제출 시 생략)
2. 통장 사본
3. 현장실습보고서(시스템 입력)

* 출석관리시스템 오류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사용

연수생	출 근 부 (월)
-----	-------------

성 명 : 연수기간 - (개월)

선도농가 :

[illegible]

* 확인란에 선도농가가 일일 출결 확인(출퇴근시간 기입) 후 직접 서명

[붙임 16]

현장실습교육 실습일지(연수생 작성)

(※ 해당 작업내용에 ☒ 표시후 학습내역 작성)

일 자	학 습 구 분		확 인
월 일	☐ 농약 ☐ 비료 ☐ 제초 ☐ 파종 ☐ 작물관리 ☐ 환경관리 ☐ 수확·선별 ☐ 기타 ()		
	학습시간	학습내용	
	※ 필요시 사진 첨부		
월 일	☐ 농약 ☐ 비료 ☐ 제초 ☐ 파종 ☐ 작물관리 ☐ 환경관리 ☐ 수확·선별 ☐ 기타 ()		
	학습시간	학습내용	
	※ 필요시 사진 첨부		

* 시군센터 여건에 맞게 경영일지 등으로 대체 가능

[붙임 17]

()월 선도농가 교육지원비 청구서

사업장명		대표자	
------	--	-----	--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

소재지		연락처	() -
-----	--	-----	-------

지급희망 은행계좌	계좌번호:(은행) (예금주:)
--------------	--------------------

신청 대 상 기 간	· · · ~ · · ·	신청금액			원 (₩)
연수생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연수기간	교육일수	교육시간	청구금액
					원
					원
					원
					원

위와 같이 연수생 현장실습 교육시행에 따른 교육지원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연수생

(서명 또는 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구비서류】 1. 연수약정서 사본(기 제출 시 생략)
2. 통장 사본
3. 현장실습보고서(시스템 입력)

〈앞면〉

①선도농가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②연수생	(성명)	(생년월일)
③연수작목	(주작목)	(부작목)
전체연수기간		
④보고연수기간		
⑤교육의 주요 내용		
⑥기타 특이사항		

* 선도농가는 매월 추진실적 보고, 사업종료 시에는 결과보고서로 제출
(단, 시스템 보고자는 생략 가능)

보고자(선도농가): (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뒷면>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추진실적(결과) 보고서 작성요령

① 선도농가: 개인의 경우는 성명과 생년월일, 농업법인은 법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② 연수생: 연수생이 2인일 경우 각각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

③ 연수작목: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④ 보고연수기간: 추진상황 보고 내용에 해당되는 연수 기간을 기입

(결과보고서에서는 전체 연수기간과 동일)

⑤ 교육의 주요 내용: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한 교육 내용을 기입

⑥ 기타 특이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

제 호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수료 증명서

성 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연 수 기 간 : ~ (총 시간)
연 수 작 목 :

위 사람은 농촌진흥청이 시행하는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에 참가하여
그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2024년 월 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수료생 관리대장

No	성명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	주소	연수작목	연수기간 (개월)	영농현황 (실습종료시)			영농현황 (실습종료 1년 후)			영농현황 (실습종료 2년 후)		
								영농중	영농진입준비	추후결정	영농중	영농진입준비	추후결정	영농중	영농진입준비	추후결정
1	홍길동	남	2000.1.1.	000-0000-0000	전주시	사과	2021.5.1. ~9.30. (5개월)			○		○		○		
2																
3																
4																
5																
6																
7																
8																
9																
10																
11																

* 농업기술센터는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수료 후 2년간 사후관리 실시